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30)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및 공제기간 연장 (송재봉의원안)	2

I. 개요

1.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23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4. 12. 5.
- (3) 회 부 일 : 2024. 1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한시적 상향 및 공제기간 연장 (송재봉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4제4항·제8항) ☐ 기부금 세액공제율(제4항)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한시적 세액공제율 특례(제8항) - <u>2024.1.1.~2024.12.31. 기간 중 3천만원</u> <u>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율 40% 적용</u>	☐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현행과 같음) ☐ <u>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u> <u>한시적 상향 및 공제기간 연장</u> - <u>2025.1.1.~2025.12.31. 기간 중 3천만원</u> <u>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율 50% 적용</u>

* 송재봉의원안 2024. 12. 5. 제출(의안번호 6230)

☐ 개정안은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3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부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부담으로 복지정책의 효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의 제도 연혁을 보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당시까지의 기부금

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공제율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분은 25%)로 전환된 이후,

2015년에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0%로 인상되었고 고액기부의 기준도 3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하향되었으며, 2018년 세법개정 시 고액기부의 기준을 다시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낮추어,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유인은 세액공제 전환 이후에는 일정 부분 강화되어 왔음. 또한, 2021년 세법개정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한 해 동안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1천만원 이하 및 1천만원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되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음.

[기부금 공제 개정 연혁]

과세표준		2013년 이전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2021년, 2022년 개정	2023년 개정
공제 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율	1,200만원 이하	6%	15% (3천만원 초과분 25%)	15% (2천만원 초과분 30%)	15% (1천만원 초과분 30%)	2021년, 2022년 기부금에 한하여 20% (1천만원 초과분 35%)	15% (1천만원 초과분 30%) (2024년에 한하여 3천만원 초과분 40%)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주: 2013년 이전에는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공제가 이루어져, 이에 공제율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한계세율과 같았음.

□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되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24년도에 한시 적용된 40%보다 10%p 높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기부참여율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¹⁾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은 2013년 34.6%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21.6% 수준으로 하락 후 2023년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최근 1년 이내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

(단위: %)

연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비율	34.6	29.9	26.7	25.6	21.6	23.7

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2023. 11.

최근 대외경제 불안정성 심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복지 수요 증대 및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기부 문화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기부문화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영국의 자선단체 자선지원재단 및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 갤럽의 조사에 의한 “세계 기부 지수 (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1)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전국 약 1만 9천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

우리나라는 전체 142개국 중 79위로 미국(5위), 영국(17위), 싱가포르(22위) 등 주요 OECD 국가 및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순위이므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저조하여 공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기부금에 대한 26개 국가의 세제혜택을 비교한 연구자료²⁾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순위는 26개 국가³⁾ 중 고액 기부의 경우 24위⁴⁾, 소액기부의 경우 18위 수준으로 나타났음.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캐나다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66%의 공제율을⁵⁾ 적용하고 있어⁶⁾ 우리나라(15%~30%)가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작은 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과 실제 기부금 증액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공제율 상향이라는 정책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과거의 기부금 실적을 보면,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

2)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Treatment of Donations」, Charities Aid Foundation, 2016. 7.

3) 26개 국가에는 싱가포르,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호주,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트남, 폴란드, 필리핀, 아일랜드, 페루,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 인도, 대한민국, 러시아가 포함됨(국가 순서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순위).

4) 다만, 이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2019년 법 개정(30% 세액공제 기준금액 : 2천만원→1천만원)을 감안하여 재계산하면 고액기부의 경우 20위가 될 것임.

5)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2017. 12. p. 60.

6) 김진수·김태훈·김정아,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9. 8. p. 54.

서 세액공제로 대폭 변경된 이후인 2014년에 기부금 신고액이 감소한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제도 변화 없이도 기부금 신고액이 상당 폭 증가(증가율 16.99%)한 바 있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2천만원 초과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2019년부터 1천만원 초과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율을 상향하였으나 2018년 대비 2019년의 기부금 총액 증가율(4.55%)은 제도변화가 없었던 2017년 대비 2018년의 기부금 총액 증가율(4.54%)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

또한, 2021년 및 2022년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p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각 연도 말에 이루어졌는데, 전년대비 기부금 증가율이 증가하였음.

[연도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만명,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인원	441.3	459.4	480.2	501.1	530.0	554.6	567.7	590.8	634.8
신고금액	51,155	55,066	57,262	59,864	62,592	62,664	65,615	69,108	12,348*
신고금액 증가율	16.99	7.65	3.98	4.54	4.55	0.12	4.71	5.32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6

*2023년의 경우 기부금의 공제세액만 존재하고 이는 2022년도 14,238억원보다 감소한 수치임.

[연도별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세지출 내역	9,242	9,972	10,788	10,807	14,401	15,51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

주: 소득세법 제59조의4 4항에 따른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현황

□ 2014년 당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변화로 세제상 혜택이 줄어든 고소득계층의 평균 기부성향은 개인단위 및 가구 단위 분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세제상 혜택이 늘어난 저소득 계층의 평균기부성향은 개인단위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한 의견이 있었음.⁷⁾ 또한 특정 고액기부금 구간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제도변화는 기부금 유도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한 제도 변화는 모든 구간의 기부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⁸⁾

미국의 경우 소규모세제 혜택의 삭제는 기부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규모 세액공제의 도입은 기부를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 사례가 있고,⁹⁾ 기부금의 성질 등에 따라 세제혜택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음.¹⁰⁾ 이와 같이

7)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박명호, 2014

8)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2025.3.
해당 내용의 발제자 역시,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이미 기부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부금 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한 기부금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조세 지출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9) Do tax credits benefit charities? Evidence from two states, Anubhav Ghuta, 2023, contemporaray economic policy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변화가 기부금 납입액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5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8

10) Do tax incentives affect charitable contributions? Evidence from public charities' reported revenues, Journal of Public Economic, 2016.5.